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91

2007년 8월 31일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  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8월 17일, 서울특별시장
   나. 회부일자 : 2007년 8월 22일
   다. 상정일자 :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   (2007년 8월 31일 상정·의결)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건강국장 이정관)
   가. 개정이유
   ○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계획에 따라 장애인·정신질환자 등 입소자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추가하고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나. 주요내용
   1)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명칭과 기능 등을 규정함(안 별표)
   ○ 시립은혜로운집 (은평구 구산동 산61-8) : 정신질환자 보호
   2) 운영중인 장애인보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추가함(안 별표)
   ○ 시립평화로운집 (은평구 구산동 산61-8) : 중증장애인 보호
   ○ 시립영보정신요양원 (용인 처인 이동 묵리 464) : 정신질환자 보호
   3)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(제3566호 2007.07.30)으로 부랑인 관리업무 등이 사회과에서 자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시설의 소관부서를 변경함(안 별표)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남중)

<총 괄 부 문>
○ 『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2조제2호와 제5조제2항의 자구를 수정하고
○ 현재 장애인, 정신질환자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요(要)보호자들이 혼합되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문제를 보건복지부의 「2004년도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계획」에 따라 요(要)보호자별 특성에 맞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
○ 『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별표 안에,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,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별 시설에 대한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임.

<세 부 사 항>
□ 제2조제2호와 제5조제2항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
○ 자구수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□ 동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수정에 대한 의견
○ 조례 별표 수정은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계획에 따라 단순보호 성격의 과밀수용과 낮은 운영비 지원 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이 어려웠던 대형 수용시설을 장애인, 정신요양 등 전문시설로 기능을 분화하여 전문서비스를 받지 못한 입소자들

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

<표 1> 기능분화 전·후 시설 정원

기능분화 전		기능분화 후		
시 설 명	정 원	시 설 명	정 원	기 능
시립은평의마을	2,000명	시립은평의마을	1,570명	남성 부랑인 보호
		시립평화로운집	230명	중증장애인보호
		시립은혜로운집	200명	남성 정신질환자 보호
시립영보자애원	1,000명	시립영보자애원	650명	여성 부랑인 보호
		시립영보노인요양원	100명	노인요양
		시립영보정신요양원	200명	여성정신질환자보호

<표 2> 연간 1인당 운영비 지원단가(2003년 9월 기준)

구 분	부랑인복지시설	정신요양시설	노인요양시설	장애인생활시설
지원단가	1,849천원	2,310천원	4,039천원	6,770천원

<표 3> 기능분화로 인한 운영비 규모

기능분화 전			기능분화 후		
시 설 명	정 원	운영비	시 설 명	정 원	운영비
시립은평의마을	2,000명	3,698백만원	시립은평의마을	1,570명	2,903백만원
			시립평화로운집	230명	1,557백만원
			시립은혜로운집	200명	462백만원
시립영보자애원	1,000명	1,849백만원	시립영보자애원	650명	1,202백만원
			시립영보 노인요양원	100명	404백만원
			시립영보 정신요양원	200명	462백만원
합 계	3,000명	5,547백만원	합 계	2,950명	6,990백만원

주. 운영비 단가는 2003년 9월 기준이며, 인원은 각 시설의 정원기준으로 계산함.

○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,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별표에 추가하여 개별 시설에 대한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기능분화로 인하여 기능분화된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며, 정원기준으로 1,443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1. 관련시설에 대한 현황

○ 별표에 신설되는 정신요양시설은 '은평구 구산동 산61-8'에 위치한 "시립은평의마을"에서 정신요양으로 기능분화한 "시립은혜로운집"으로 남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이며 '07년 9월에 개원 예정인 시설임.

○ 별표에 신설되는 장애인보호시설은 '은평구 구산동 산61-8'에 위치한 "시립은평의마을"에서 2005년 장애인보호로 기능분화한 "시립평화로운집"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며, 기존 생활관 리모델링(소요예산 1,700,000천원)을 통하여 '05.01.01에 개원한 장애인보호시설임.

○ 별표에 신설되는 정신질환자보호시설은 '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목리464'에 위치한 "시립영보자애원"에서 2005년 정신질환자보호로 기능분화한 "시립영보정신요양

원"으로 여성정신질환자보호를 위한 시설이며 기존 생활관 리모델링(소요예산 312,733천원)을 통하여 '05.01.01에 개원한 정신질환자보호시설임.

○ 소관부서 변경으로 인해 별표에 신설되는 부랑인보호시설은 '은평구 구산동 산61-8'에 위치한 "시립은평의마을"로써 개원일은 '61.06.01이며, '81.01.01 서울시로부터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에서 수탁운영하는 시설이며, 남성부랑인을 대상으로 장기보호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시설임.

2. 소관부서 등재 및 변경에 대한 의견

○ 「부랑인복지시설 기능분화계획」으로 인한 소관부서의 등재와『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』개정으로 인한 소관부서의 변경은 미등재 및 미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업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"시립은평의마을"은『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』의 개정(제3566호 2007.07.30)으로 부랑인 관리업무 등이 '사회과'에서 '자활지원과'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시설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입소자들에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"시립평화로운집"은 "시립은평의마을"에서 2005년 1월 기능분화한 시설로 남성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,『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』제14조5항 규정에 의해 당 시설의 소관부서를 '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'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, 2년 전에 기능분화되어 운영 중인 시설을 현재에 와서 소관부서를 등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할 사항임.

○ "시립영보정신요양원"은 "시립영보자애원"에서 2005년 1월 기능분화한 시설로 여성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, 『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』제14조7항 규정에 의해 당 시설의 소관부서를 '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'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, 2년 전에 기능분화되어 운영 중인 시설을 현재에 와서 소관부서를 등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할 사항임.

○ "시립은혜로운집"은 "시립은평의마을"에서 기능분화되어 2007년 9월 개원예정인 시설로 남성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,『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』제14조7항 규정에 의해 당 시설의 소관부서를 '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'로 하는 것으로

○ "시립영보정신요양원"과 "시립은혜로운집"의 소관부서에 관련해서는 모체가 되는 "시립영보자애원"과 "시립은평의마을" 기존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는 것임으로 시설별로 소관부서가 서로 달라 관리 및 감독의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『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』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소관부서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.

3. "시립은혜로운집" 사업 관련 검토

○ "시립은혜로운집"은 2005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최초 공사시행부서인 건설안전본부의 사업일정대로 공사계약이 2006년 4월에 이루어질 경우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(3,466,800천원)가 불용 처리됨에 따라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<표 4> “시립은혜로운집” 사업변경추진일정(건설안전본부)

구분	당초계획	변경추진일정(건설안전본부)
사업일정	o ‘05.8~10 : 기본 및 실시설계 o ‘05.10 : 공사 발주 o ‘05.11 : 공사 착공 o ‘06.10 : 공사 준공	o ‘05.8.31 : 설계용역 발주방침 o ‘05.9.9 : 설계용역 발주 o ‘06.2.28 : 설계용역 준공 o ‘06.3.17 : 공사 발주 o ‘06.4.4 : 공사 계약 및 착수 o ‘06.10.31 : 공사 준공

○ 2006년 기확보된 국비(50%)의 재확보가 불가능하여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시행을 하지 못하고 “시립은평의마을”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2007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임.

○ 2005년 최초 사업계획당시 지하1층/지상3층(면적1,980㎡)에 정원 270명으로 계획하였으나, 2005년 11월 입소정원과 면적의 변경승인이 되어 정원 200명, 면적 2,727㎡으로 변경이 되었으며, 2006년 1월 지하1층/지상6층(면적 3,731㎡)으로 면적변경이 승인되었고, 2006년 11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(2007년 6월 30일)이 연장되었음.

<표 5> ‘시립은혜로운집’ 사업변경 과정

구 분	당 초	1차 변경	2차 변경	3차 변경
정 원	270명	200명	200명	200명
시설규모	1,980㎡	2,727㎡	3,724㎡	3,724㎡
공사시행	서울시건설안전본부	시립은평의마을	시립은평의마을	시립은평의마을
공사일정	o ‘05.8~10 : 설계 o ‘05.10 : 공사발주 o ‘05.11 : 공사착공 o ‘06.10 : 공사준공	o ‘05.10.27: 설계발주 o ‘06.1.24 : 설계준공 o ‘06.2.1 : 공사발주 o ‘06.2.20 : 공사착수 o ‘06.11.30: 공사준공	o ‘05.10.27: 설계발주 o ‘06.1.24 : 설계준공 o ‘06.2.1 : 공사발주 o ‘06.2.20 : 공사착수 o ‘06.11.30: 공사준공	o 공사기간 2007년 6월 30일로 연장
사 유	o 부랑자 기능분화계획에 따른 시설분화 사업계획	o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정원조정 o 정신요양시설 정원수용을 위한 면적확대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업체 변경 및 공사일정 승인	o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면적확대 o 증액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	o 설계변경 따른 공사기간 연장

○ 이는 최초 기능분화계획서 검토당시 시설의 규모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,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미구성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